

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시 덕양구 주교동 618번지 외 25필지 상의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한 사항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6. 20.

고 양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- 다. 인가일 : 2025. 6. 17.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8번지 외 25필지
- 나. 면 적 : 5,628.7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
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의 명칭 :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(성사동 704-4번지), 311호

5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

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

토석의 채취, 토지의 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)

6. 지형도면

